##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7

발의연월일: 2020. 7. 10.

발 의 자: 정춘숙·박용진·송옥주

유동수 · 임종성 · 송갑석

김철민 · 서삼석 · 기동민

박찬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제48조제5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교육실시 기관, 교육훈련 방법·절차 및교육훈련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총리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4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평가, 업무정지·시정명령·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시정명령·지정취소 등의 규정은 국민의 권익침해적인 규범이며, 특히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으면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기관의 운영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 운영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및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른 규제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하위 법령 등에 규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제48조의5 신설 등).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7항 중 "인증요건·인증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관, 교육훈련 방법·절차, 교육훈련비"를 "인증요건·인증절차"로 한다.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8조의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교육훈련기관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 제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⑤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인력·시설·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훈련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 절성·충실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내용·시기·방법,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 5.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제48조의4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1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육훈련기관의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제4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	⑦
업소의 <u>인증요건·인증절차, 제</u>	<u>인증요건·인증절차</u>
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	
에 대한 교육실시 기관, 교육훈	
<u>련 방법·절차, 교육훈련비</u>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⑧ ~ ⑭ (생 략)	⑧ ~ ⑭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48조의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8조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
	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
	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
	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
	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

- 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교육훈련기관은 제48조제5 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훈련수료증을 발 급하여야 한다.
- ⑤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인력·시설 ·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훈련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충실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 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 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 관의 지정 절차, 교육 내용・시 기・방법, 실시 비용 등에 필요 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5(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신 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지

   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운 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경우
- 4.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 훈련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 5.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평가 를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매우 부실 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제48조의4제8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 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지 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 설>

3. • 4. (생략)

에 교육운던기관으로 시성해서
<u>는 아니 된다.</u>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
로 정한다.
]81조(청문)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3. • 4. (현행과 같음)